

2024년도

동대문구 종합감사사례집



DONGDAEMUN-GU



DONGDAEMUN-GU



DONGDAEMUN-GU



A COLLECTION OF AUDIT CASES



종합감사 동대문구



이 사례집은 2024년 우리 구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감사 당시의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감사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4년도 동대문구 종합감사사례집

part I **감사** **1**

- 1. 일자리·청년분야 3
- 2. 복지정책·사회복지·보육여성 분야 17
- 3. 경제진흥·청소행정 분야 51
- 4. 동주민센터 분야 73
- 5.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분야 99

part II **조사** **129**

- 2024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
(행정안전부)

part III **계약심사** **139**

part IV **청렴** **155**

DONGDAEMUN-GU



2
0
2
4
년
도
동
대
문
구
총
합
감
사
사
례
집

I

감사



A COLLECTION OF AUDIT CASES



2 0 2 4 년 도 동 대 문 구 종 합 감 사 사 례 집



1

일자리·청년분야



1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 산정 소홀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VI.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x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부서 직원들이 공가·연가·반일연가·외출 등을 사용한 날을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월간 출근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2021. 1. 1.부터 2024. 1. 30. 감사일 현재까지 모두 10건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 157,750원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 157,75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출근 근무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 1. 1.부터 2024. 1. 30. 감사일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건의 집행내역에 대상인원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담회 등 접대비 금액의 지급단가(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적정성 확인이 불가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금액을 준수하여 집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 민간위탁금 사업비 정산에 대한 확인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DDM ▲▲▲▲센터 ▲▲▲」의 운영을 위한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구가 지급한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은 지출 품의서(내부기안)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결의서는 지출이 발생한 후 3일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협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방의 선금 지급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DDM ▲▲▲▲센터 ▲▲▲」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면서,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지출결의서 최대 57일 지연 작성, 시간외 근무수당 착오 입력으로 56,000원 과다 지급, 선금지급 절차에 맞지 않게 선금 지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사항이 있음에도 보완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과다 지급한 시간외수당 56,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서 검토 시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이나 보완요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4 공사 준공 전 설계변경 미실시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공사량의 증감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 2023년 ◎◎동 청년주택 내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준공 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부서 자체 실정보고 후 계약부서에 변경계약 요청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 준공 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향후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일 이전에 시행하는 등 공사계약 관련 업무절차에 철저

5 건설관리시스템(ONE-PMIS) 준공도면 등록사항 확인 소홀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면 분실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공자가 준공도면을 등록하면 계약담당자가 도면 입력 여부를 확인 후 준공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 2023년 ◎◎동 청년주택 내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준공도면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금 지급

조치사항

시정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동 청년주택 내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건축공사 외 1」의 준공도면을 등록, 앞으로 시공자가 준공도면을 등록하면 계약담당자가 도면 입력여부를 확인 후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소홀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승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받은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 2023년 ◎◎동 청년주택 내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시행 전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를 검토, 승인 통보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건설공사 시행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이 절차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7

하자검사 미 실시 및 담보책임 존속기간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 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시설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 2023년 ◎◎동 청년주택 내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칸막이공사 및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준공 이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최종하자 검사만 실시하거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법령상 기준과 다르게 적용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1건에 대해 준공검사일 기준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설정된 하자보수보증서로 다시 제출받고 향후 시행하는 공사의 정기하자 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

8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검토 및 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1. 9. 6.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상근직원에게 평상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
- 또한,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2020. 12. 고용노동부)“X III.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 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는 급여총액×참여율로 산정하고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회계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 1. 1.부터 2024. 1. 30. 까지 동대문♠♠♠♠♠♠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 등 여성일자리지원 사업 운영” 등 6개의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산출내역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인건비 지급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을 완료함. 또한, 일부 상근직원이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로부터 동시에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정산검사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등 각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건비 산출 내역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개선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9

보조사업 예산변경 승인 절차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또한,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II.마을기업의 관리 2.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에 따르면 마을기업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변경 내용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승인한다고 되어있으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창의적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항간 예산전용, 신규 목 신설 시 등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승인을 거친 후 변경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시·군·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 1. 1.부터 2024. 1. 30. 까지 보조사업자로부터 총 4회 예산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별도 검토, 승인 및 승인 통보 절차 없이 보조금관리 시스템으로만 변경 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이 적정한 경우 승인하고, 승인 여부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0

행정사무 민간위탁 절차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자치사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2022년, 2023년 해당 센터 운영사업의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수탁기관 선정 결과 구 홈페이지 공고를 소홀히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행정사무(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재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1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업무 소홀

관련규정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르면 유료직업 소개사업소를 하는 자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 후 10일 이내에 그 증빙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관내 직업소개소를 지도·점검 및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보증보험 보증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보증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인력공사(직업소개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매년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면밀한 정기점검 및 행정조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2

취업지원관 채용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뉴딜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해 3인 이상의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은 외부위원에 한하여 기본료 100,000원, 2시간 이상 시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 관내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면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외부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면접 시간에 따라 100,000원, 또는 2시간 이상인 경우 1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총 2차례에 걸쳐 외부위원 ○○○ 등 2명에게 70,000원을 각각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채용 면접심사 등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 시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당을 과소·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육여성 분야**



1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하였으나, 출장명령 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설정한 소속 직원 5명에게 출장여비를 총 16회, 계 210,000원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관내 출장여비 및 가산금(100,000원) 계 31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관내 출장 시 공용차량 사용 여부를 잘못 신청하여 관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일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2

보훈단체 지원금 보조금 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관내 보훈단체에 대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관리·감독 및 사업 완료시 정산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2년 ~ 2023년 일부 보훈단체에서 차년도 명절 선물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구입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나 정산검사 시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정산 완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보조금 정산 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
- 또한, 舊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8127호) 제7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장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에게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생활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하였으며, 기존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였던 ■■■■이 신규 신청하였음에 별도 확인없이 신규 신청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소급분을 추가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중복 및 추가 지급한 생활보조수당 계 1,70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시 보훈예우수당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자와 중복 지급하거나 기존 지원대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4 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미흡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5절 제3관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며, 이윤은 영업이익으로서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년 ~ 2023년 <<회관 보일러 세관 및 부대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폐수처리비 공종에 대하여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 준공 시 별도의 적정한 조치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시행하는 공사의 발주 및 준공 시 간접공사비(제비율)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맞게 준공 정산을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사회복지법인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공고 부적정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6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내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및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2022년도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2021년도에는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만 공개하고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미공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및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공고 및 공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6 기부물품에 대한 지정기탁서 미송부

관련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며 다만,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공식후원기관을 통한 접수 및 배분업무를 수행하면서, 후원받은 물품에 대해 배분 후 지정기탁서 및 관련 자료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 공식 후원기관에 송부하는 기탁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후원받은 일부 물품에 대한 지정기탁서 및 관련 자료를 공식 후원기관에 미송부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기부물품에 대하여 공식후원기관에 기탁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7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서' 제14조 및 '▲▲▲푸드·뱅크마켓 위·수탁 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위탁자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 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동대문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및 ▲▲▲푸드마켓·뱅크를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운영하면서 위·수탁 계약서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미가입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자인 (사)▼▼재단이 위·수탁 계약서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에 따른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8

긴급의료지원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요청 소홀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결과 과다 징수한 금액은 확인을 요청한 자(수급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긴급 의료지원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 원 이상(2020. 7. 31. ~ 2021. 12. 31. 기간 중 지원요청 건은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긴급의료 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항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요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기관(병원)이 비급여 항목으로 요청한 진료비가 요양급여항목으로 확인되면 과다하게 징수한 의료비를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및 긴급의료지원을 실시한 보장 기관에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 1. 1.부터 2024. 2. 27. 까지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에게 긴급의료지원비를 지원하면서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 원 (또는 상기 기간에 따라 200만 원)이상인 총 6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긴급의료지원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총 6건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하고, 앞으로 긴급의료지원비를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9

긴급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미이행

관련규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원비용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지원비용 환수 납부를 통지해야 하며,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 1. 1.부터 2024. 2. 27. 까지 긴급복지 지원비용 환수 결정을 하고 환수금을 징수하면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환수대상자 ☆☆☆ 외 12명에게 반환 통지,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긴급복지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 외 12명 계 12,832,770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긴급복지지원비용에 대해 환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0

고독사 예방계획 미수립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후 2022년 및 2023년에는 고독사 예방계획을 미수립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복지정책 추진 등을 위해 고독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1

고독사 위험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대가 지급청구 검토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8조 및 「고독사 위험 가구 건강음료 지원 사업 협약」에 따르면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 가구의 건강증진과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반찬 및 건강음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고독사 위험가구에 주 3회 건강음료 지원 및 안부 여부를 확인하는 “고독사 위험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 ●●지점이 제출한 대가지급의 청구 서류를 검토시 방문 가구보다 건강음료 배달 수량을 과다하게 반영하거나, 일부 지점에서는 대금청구서 상 가구 방문 횟수를 불명확하게 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재검토 및 반려 처리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향후 건강음료 대금지급 시 대금청구서 상 음료 지급수량과 가구 방문횟수의 일치여부 확인 및 계약 상대방과의 협약 사항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2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사용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6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등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같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변경하는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공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공가 당일에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가를 사용한 날을 연가보상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연가 저축시간을 과다 이월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108,050원 환수 및 과다 이월한 연가 저축시간 7시간을 삭감하고 앞으로 연가보상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1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계층에게 생계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사망으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 외 1명에게 생계급여 483,860원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급여 중지처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산정 부적정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제2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고 규정
-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이를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한다고 규정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질의 응답집」(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적이전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입금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입금 내용이 소득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판단’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입출금내역이라도 수급(권)자의 소명 및 증빙과 보장기관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

지적사항

◇◇◇◇과는 기초의료급여대상자인 ♣♣♣이 자녀로부터 최근 1년간 총 11회
 계 5,300,000원의 정기적인 입금내역이 확인됨에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은 수급권자의 소명 및 증빙과 보장기관의 확인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음.
 또한, ♠♠♠에 대한 수급자격을 조사하여 사적이전소득을 계산하면서 계산식의
 오류로 사적이전소득을 착오하여 과소 산정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환계

♣♣♣에 대해 사적이전소득산정여부를 재검토하여 기록하고, 향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15

기초연금 신청자 재산 및 부채 산정 소홀

관련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법령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산정방식을 적용
- 위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 조사 시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부채조사 시 임대보증금의 부채 처리방법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하며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일 경우에는 주택시가표준액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 부채로 인정한다고 명시

지적사항

◇◇◇◇과는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시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처분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의 다른 재산을 취득하여 일반(기타)재산으로 잡지 않아야 함에도 일반(기타)재산으로 산정하거나, 부채산정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의 임대보증금 총합이 시가표준액 50%보다 작음에도 시가표준액 50% 전체를 적용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16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자 관리 부적정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를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간주하며,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12조 및 「근로능력 판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자로 변동되어 '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으로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나,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관리하면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경과한 ㉠㉠㉠ 외 1명의 근로능력판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계급여 과다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관리 업무를 하면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경과한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17 전입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업무 소홀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를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간주하며,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12조 및 「근로능력 판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으로 변동되어 '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으로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나,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능력없음' 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경과한 채 동대문구로 전입 온 ●●● 외 2명의 근로능력판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조치사항

개선

앞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월 1회 전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등 관리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경과한 채로 전입하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18

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 부적정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급여액·급여종류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관리가 필요하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고 규정
- 한편, 「기초연금법」 제16조 및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의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관리하면서 사망 및 국외체류로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 === 외 2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기초연금 계 1,141,060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수급자의 수급자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해당사항을 행복e음시스템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9

자활사업 조건제시유예자 관리 소홀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보장 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자는 조건제시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제시유예 결정을 한 수급자 ▼▼▼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참여 의무' 및 '상담불응 시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하지 않는 등 자활사업 참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계급여 과다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건제시를 유예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수급자에게 반드시 자활사업 참여 관리를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0 자활기금 자금 효율적 운용·관리 소홀

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자활기금은 존속 기한이 없는 법정무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전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최근 3년간 자활기금의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자금의 변동성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수익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지 않거나, 지출액 대비 적은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기금자산의 정기예금 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홀히 관리

조치사항

권고

향후 자활기금 운용 시 기금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1

자활근로자 복지도우미 참여기간 연장 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실시한다고 규정
- 「2024년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복지도우미의 참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 시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자활사업의 복지도우미 5년차 기간 연장 요건인 '사무관련 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4년차 근무기간 종료 17일 이후 신규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출한 ○○○○과 4년차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5년차 계약을 체결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자활근로자의 참여기간 연장 시 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2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舊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69호) 제7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에 채용 예정인원을 2명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채용은 공고문과 다르게 3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고문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3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시기 부적정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설립 예정인 어린이집 중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선정은 신축시설의 신규 위탁의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면서 선정기한보다 최소 21일에서 최대 174일 지연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시기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서울특별시 지침) 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 등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하고, 보육교사 중식비는 처우개선비 지원조건을 준용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 외 2명에게 처우개선비, 중식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지원금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처우개선비, 중식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지원금 계 50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25 공사 준공업무 소홀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방계약법 관련 한시적 특례기간으로 검사기간 7일)에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지연배상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소관 부서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최소 30일에서 최대 32일까지 준공 검사를 지연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향후 시행하는 공사의 준공검사를 기한 내(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6 공사 원가계산 산출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5절 제3관에 따르면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15% 내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 가공비는 제외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예규 제2장 제5절 제1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 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소관 부서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로굴착허가비에 대해 이윤을 반영하였으며 공종단가를 총계방식으로 표기하는 등 공사 원가계산을 부적정하게 산출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시행하는 공사의 발주 및 준공 시 간접공사비(제비율)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규정에 맞게 준공 정산을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7

인건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퇴직적립금 미반환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적립금 처분수입으로 세입처리 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지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어린이집 폐지신청에 대한 수리업무를 처리하면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인 ■■■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반환요구 미이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어린이집의 폐지 처리 시 미반환된 퇴직적립금에 대해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8

어린이집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미실시 및 처분사항 관리 소홀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
-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등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때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한편,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 「어린이집 현지조사 지침」(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각 단계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고 행정처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시까지 현지점검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시정명령을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을 미입력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명령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기한 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을 입력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9

어린이집 폐·휴지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 또한,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폐·휴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폐·휴지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어린이집의 폐·휴지 신고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 외 17개 어린이집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지 않음. 또한, 어린이집 폐·휴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폐·휴지일 이전 수리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어린이집 외 9개 어린이집의 신고에 대하여 폐·휴지일 이후 수리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어린이집의 폐·휴지 신고에 대한 업무처리 시 어린이집의 폐·휴지일 전 수리절차를 완료하고, 2개월 전 폐·휴지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 집행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
-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1인당 1식 급식단가 8,000원 이내)를 적용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을 운용하면서 물품구매 품의 시 견적서 및 타견적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물품검사를 완료하기 전 물품 구매 대가를 지급하거나,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민간인에게 급량비 지급 시 매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등 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1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100분의 20)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이 때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60%)를 공제하고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서류 없이 활동비를 지급하였고, 불법촬영 감시단 활동비가 125,000원을 초과하는 총 14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소홀히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에 활동비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활동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하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2

한부모아동양육비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미이행

관련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과오수급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주어 반환을 통지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며 독촉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한부모아동양육비를 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과잉지급분을 환수하면서 ▣▣▣▣외 2명에게는 반환 통지를 하지 않고, ▤▤▤▤ 외 2명에게는 반환명령 미납에 따른 독촉을 하지 않는 등 징수 절차 미이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한부모아동양육비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 외 5명
 계 4,600,000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한부모아동 양육비에
 대해 환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3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중복 지급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르면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 외 3명에 대하여 출생지원금 및 ㄹㄹㄹ 외 2명에 대하여 입학축하금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중복 지급한 출생지원금 계 210만 원 및 입학축하금 계 180만 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급 시 담당자의 착오로 중복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

경제진흥· 청소행정 분야



1

기부채납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업무 소홀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시점은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전농동 ***-**-**번지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가 ‘▼▼▼지원센터’로 변경되어 지방의회에 예산의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지연 제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공유재산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부적정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 기관은 그 내용을 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 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폐업하였을 경우, 융자를 받은 이후에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대문구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동대문구 또는 은행은 대출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중소기업자가 휴·폐업·부도 또는 사업장을 타 시·도·구로 이전한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사유발생일로부터 동대문구에게 이자 차액 보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지적사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대출 업체의 폐(휴)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가 폐(휴)업 상태로 확인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업체중 13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정기적인 관리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를 받은 업체가 관외이전을 하거나 폐업 했을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나 확인을 소홀히 함

조치사항

주의·개선

앞으로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에 대한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시 협약서 등에 정해진 협약 내용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3

불법·불량제품 행정처분 요구사항 미이행

관련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5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7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지적사항

◇◇◇◇과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불법·불량제품 행정조치를 의뢰받고 미조치 업체에 대한 재요청을 받았음에도 관련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행정처분을 미실시한 <<디자인 외 10개 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향후 의뢰받은 처분을 미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대부업 등록 첨부서류 확인 소홀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또는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대부업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한편,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및 등록갱신신청서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공제보험을 받지 않거나, 상호 및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전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공제보험을 제출받아 별도 보완 없이 등록업무를 처리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대부업 신규 및 변경등록 업무처리 시 법령에 따라 첨부서류 확인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전통시장 매니저 채용 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시 사업별 신청자격, 선발기준, 근무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명시
- 한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결사항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면서 공고문에 채용 예정인원을 4명으로 명시하였으나, 공고문과 다르게 6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훈계·주의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무전결 처리규정에 따른 전결규정을 준수하고 공고문과 다르게 선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및 준공검사 소홀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20조,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3장에 따르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청량리 ◆◆◆시장 캐노피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설 폐기물처리량이 100톤을 초과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하나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정산 처리하였고, <<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행 하면서 준공 내역서상 계상된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처리

조치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폐기물처리비 1,648,610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환수 조치 시행 및 향후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반드시 분리 발주를 시행하도록 함. 또한 준공 전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대금수령확인서, 오픈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서 등)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대금 지급하는 등 실비 정산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철저

7 도로점용(굴착) 허가 미신청

관련규정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장소 및 면적,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과 시기, 복구방법이 포함된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해 도로공사의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도로상 굴착행위를 하면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조성에 따른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굴착공사가 수반될 경우 공사 시행 전 도로관리청(동대문구 도로과 또는 성동 도로사업소)에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공사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8

뉴딜일자리 참여자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뉴딜일자리 참여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입출금 계좌로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 하거나 입출금 계좌에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9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미실시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며, 공유재산심의회는 같은 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센터 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업무를 하면서 사용료를 감면하여 부과하였으나, 사용료 감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센터 내 행정재산 중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무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고,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감면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0

시설공사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11절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소관부서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자 담보책임 만료기간이 도래한 공사계약 총 15건에 대하여 최종 하자검사를 미실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조성 등에 따른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 준공 후 도급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1

시설공사 산출 및 준공 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舊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및 제2022-43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시험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0호)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 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하며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및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2건에 대하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센터 조성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준공계를 제출하였음에도 품질관리비를 검수·지급 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시설공사를 실시하며 발주 금액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준공 전 품질관리비 등 실비 정산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철저

1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미공개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3호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5건의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공개를 누락함

조치사항

현지조치

13

특수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구매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각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재무과장은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구매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동일 업체의 물품에 대하여 통합 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중복 구매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특수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 시 법령 등으로 정한 지출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4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소홀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르면 누구든지 구청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법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이 통보된 5명에게 과태료 계 1,050,000원을 부과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통보된 과태료 1,050,000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과태료 부과업무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1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제8항 제2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8항 제6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와 관련한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대행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 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6

환경공무원 휴게실 전세권 설정·말소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미상정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도록 규정
-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대장가액 2천만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적정여부를 심의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공무원 휴게실에 대한 전세 임차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문동 ***-**-****번지의 전세권 설정 및 휘경동 ***-**-****번지에 대한 전세권 말소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환경공무원 휴게실 전세임차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소홀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5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

조치사항

시정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5개 사업장에 대해 처리계획을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8

소관 위원회 위원 위·해촉 및 운영 부적정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190호)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구청장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재위촉(연임) 등 별도 절차 없이 감사일까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촉직 위원 중 5명이 '202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에 참여하도록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위·해촉 사항을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9

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 구매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매 분기 관내 민간개방화장실 점검에 따른 편의위생용품을 구매 하면서, 동일 업체에 시기나 물량을 분할하여 일부는 계약체결을 통해 구매하고 일부는 조달구매 혹은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대금을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관내 민간화장실 지원에 따른 물품 구매 시 시기나 물량을 분할하여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0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 미실시

관련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매년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교육을 누락없이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1

민간 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에 따른 고시 미실시

관련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민간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이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동대문 ☆☆☆☆센터 민간 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차 변경, 2차 변경을 거쳐 해당 센터의
출자자·운영사 변경, 자금 재조달 반영, 음폐수 처리비 지원 등의 사유로 3차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된 협약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해당 센터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변경 할 경우 변경된 실시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동주민센터 분야



1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시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회계법」 제36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동은 일상경비 지출 시 지출품의 목록 13건에 대하여 부서장 휴가 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서무업무 담당자가 일상경비지급을 위한 원인 행위를 부서장 명의로 승인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부서장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반드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상경비 원인행위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계약 발주 및 대가지급 구비 서류 검토 미흡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대금청구서와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수증권 등을 구비하여야 함

지적사항

○○○동 외 3개 동은 시설공사, 물품구매를 위한 일상경비를 지출하면서 일상 경비 지출에 대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청렴이행계약서, 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 하자보수보증서(이행각서) 등이 누락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완 없이 대금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 및 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전자세금 계산서 등)를 구비 및 검토 후 준공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에 따른 수령증 보관 소홀

관련규정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 중에서 중점관리 하여야 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 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고 수령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동은 2022년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16명에게 지정통지서 송달 후 수령증 미보관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달 하는 경우 반드시 수령증을 3년간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민방위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대 조직 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학생, 군인, 심신 장애인 등은 제외로 하며, 편성 제외 대상자의 편성 제외 시 시스템으로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재직증명서, 학생 등은 증빙 서류를 징구 및 보관하여야 함
-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 및 [별표 4]에 따라 민방위 대조직편성 지원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무는 동장 전결 사항임

지적사항

○○○동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업무 처리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동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를 해야 함에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동장의 승인 없이 전산상으로 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앞으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업무 처리 시, 반드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동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통 민방위대장 임명 부적정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6항에 따르면 통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으로, 민방위기술폰지원대의 대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통 민방위대장 임명에 관한 사무는 동장 전결사항으로 규정

지적사항

○○○동은 신규 위촉된 통장을 통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통장의 승인 없이 담당자 임의로 임명 처리

조치사항

현지조치

6 유희공간 사용허가 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자가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 구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동은 유희공간 대관신청자가 영리목적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이거나 구 사정으로 인한 취소 등 전액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액 부과 취소

조치사항

시정

부과 취소한 사용료 전액 중 취소 당일 사용료 3만원을 재부과하고, 앞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사용료 반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7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차량 운행일지 등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동은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운전자가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같은 차량이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목적지로 운행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가◆◆◆◆차량은 2023. 9. 15.부터 2024. 6. 23.까지 관련 규정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조치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주의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조례 등으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8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실비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지적사항

○○○동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자치회 정기회에 참석한 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활동실비를 본인 동의 지급 제외 사유서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미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실비를 지급하면서, 예금계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지급 제외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등 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9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주민자치회 심의 누락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며,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적사항

○○○동은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면서, 2021년도, 2022년도 및 2024년도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보고 시, 반드시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0

통장추천 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동대문구 통장 추천 및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 운영 요령」에 따르면 통장 추천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통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

지적사항

○○○동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 심의를 진행하거나, 임기만료일이 최소 21일에서 최대 170일이 경과하여 재위촉(연임) 절차를 진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 운영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및 「동대문구 통장 추천 및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 운영 요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1

주민등록사항 직권조치 업무 소홀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의 성명, 성별, 주소 등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 및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등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해야 하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며, 1년 후 미등록한 경우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을 경우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지적사항

○○○동은 거주불명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사항 직권조치를 하면서 ♠♠♠ 외 4명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 않거나, <<< 외 1명에 대하여 공고 후 직권조치를 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앞으로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권조치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반드시 통지 및 공고를 하였는지, 공고 후 직권조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2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동안의 신청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의 발급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권자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제12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동거하는 친족이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연일에 따라 달리함

지적사항

○○○동 외 3개 동주민센터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망신고 등을 지연하여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미성년자,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 등 과태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태료를 과다 부과하거나 과소 부과

조치사항

시정

과소 부과한 과태료 계 272,000원을 추징, 과다 부과한 과태료 계 166,500원을 환급하고 앞으로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 또는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관련 법 조항 및 감면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3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관련규정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하며, 위임장은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

지적사항

○○○동 외 2개 동주민센터는 인감신고인의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 하면서 위임일이 기재되지 않거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한 위임장을 접수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표시를 누락한 채 위임장을 접수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할 때에는 위임장에 위임일이 누락 되어 있는지 또는 접수인 날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4

전입신고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 소홀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지적사항

○○○동은 관내 전입신고를 한 주민의 신고내용을 사후확인 하면서 전입신고일로부터 최소 13일부터 최대 45일까지 지연하여 사후확인용 자료 출력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전입신고 내용을 사후확인 할 때에는 기한 내에 사후확인용 자료를 출력하여 통장에게 보내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5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기 또는 연 1회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장은 급여관리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점검 시 현금인출 여부 등 지침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도록 명시

지적사항

○○○동외 2개동 주민센터는 반기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하면서 통장사본, 입출금 내역 등 급여사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현금인출내역이 확인됨에도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실태 점검 시 급여사용에 대한 점검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16 정부양곡 지원 부적정

관련규정

「양곡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등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고,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를 제한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동은 지원대상자 ◆◆◆ 외 1명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자임에도 양곡구매를 제한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해 있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양곡 구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17

정부양곡 지원 관련 가구원수 확인 소홀

관련규정

「양곡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등은 정부관리 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고,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까지 신청가능하다고 규정

지적사항

○○○동 외 1개 동주민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양곡 구입 신청 시 변동된 가구원 수를 미확인하여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2개월까지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을 초과하여 신청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구입 신청 시 가구원 수 변동을 확인하여 초과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18 자활급여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2021년 ~ 2024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근로자 급여는 기준급여 ÷ 5시간(근로유지형) × 실근무시간 + 실비로 산정하며, 실비는 실제 참여일에 한하여 1일 4,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
- 또한, 주 5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 5일)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분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월차휴가로 발생하는 월차수당은 연 1회(12월) 정산·지급하되 참여자별 월차수당은 1년 동안 6일까지만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

지적사항

○○○동은 자활근로자가 월차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월 자활급여 지급시 월차 당일 실비를 제외하지 않아 쏠쏠 외 1명에게 12,000원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실비 12,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월차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9 장제급여 신청업무 처리 소홀

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고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신청을 동주민 센터에서 접수하여 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동 주민센터는 지체 없이 구청에 송부하여야 함

지적사항

○○○동은 신청받은 장제급여를 ◇◇◇◇과에 송부하면서 신청서 접수 후 최대 21일 후 송부함으로써 지급대상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 처리가 불가하게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장제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구청에 송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20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 증빙서류 확인 소홀

관련규정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신분확인용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 복지카드 등으로 나뉘며, 신용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지적사항

○○○동은 직불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시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발급대상자가 아닌 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접수 처리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대리 신청 접수 시 관련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21

장기이식자 장애등급 조정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매년 4회 신장등 장기 이식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장기이식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를 직권으로 재판정하며, 기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정할 경우 2주간의 의견청취 후 의견청취 기한 종료일 다음날 직권조정 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신장장애의 경우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임

지적사항

○○○동은 장기이식 대상자 장애등급 조정 시 기존 “심한장애”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직권 재판정하면서 2주간의 의견청취 없이 조정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신장장애의 경우 “주차불가표지” 발급대상이므로 신장 이식자에 대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직권 조정 후 기존 발급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장기이식 대상자 장애등급 조정 시 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하지 않고 장애등급 조정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발급 유형을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22 장애정도 심사결과 미통지

관련규정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로부터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심사결과가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동은 장애인 등록 신청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심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면서 ○○○ 외 8명에 대하여 신규 및 재판정 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통지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앞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정도 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23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및 관리 부적정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및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차량을 임차한 경우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정하여 ‘대여/리스차량’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고, 대여 및 리스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과 함께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와 임차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며, 동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한다고 명시
- 또한, ◇◇◇◇과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방법 안내”(◇◇◇◇과 -10594호, 2024. 3. 12.) 공문을 통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경과 시 필히 반납 후 재발급 안내를 하도록 전 동에 시달

지적사항

○○○동은 리스차량의 주차표지 유효기간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으로 설정하지 않거나 리스차량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시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대해 재발급 안내를 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시 리스차량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표지판에 대한 반납 안내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24 결식아동 급식비 신청 부적정

관련규정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기준 개선계획”(◇◇◇◇과-7038호, 2020. 5. 11.)에 따라 결식 아동급식 지원은 취학아동의 경우 연중 조·석식은 지방자치단체,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학교급식), 방학 중 중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며 소득 및 가정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연중(학기+방학) 지원대상자 및 방학지원 대상자 등으로 급식지원 유형 기준을 구분하여 지원

지적사항

○○○동은 2024년 2월 결식아동 급식비 신청 시 방학 중 중식 지원대상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방학일수만큼 중식 식수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평일 지원일인 19일 전체를 일괄 적용하여 신청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앞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신청 시 대상아동의 급식지원 유형 기준에 맞게 급식 식수를 신청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25 아동급식 조사 업무 소홀

관련규정

-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는 ‘급식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급식 신청 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 급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1회 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 중 계속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상 아동 가구의 소득 및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재판정을 실시하고 이때 대상자의 소득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의 절차는 신규 신청자 조사 절차와 동일함

지적사항

○○○동 외 2개 동주민센터는 아동급식 재판정 아동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 하면서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미작성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아동급식 신규 및 재판정 대상 아동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 시 급식 지원 아동 조사표 작성을 누락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5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분야**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지적사항

◇◇◇◇과는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아닌 구청의 초과근무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한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 ■ ■ 이 부당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에 5배의 가산금을 더한 999,900원 환수조치 및 ■ ■ ■ 에 대해 6개월간의 시간외근무명령을 금지

앞으로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지문인식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소관 위원회 관리 및 자치법규 정비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제8조에 따르면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아동 급식 업무 담당 과장 등)과 위촉직(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
-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회협의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위원회협의회의 소위원회로 두고 아동급식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겸임한다고 규정
- 한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 위원을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소관 조례 내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사항을 중복하여 존치하고 있으며 아동위원회협의회의 특정 위원이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관련 조례에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위원 총 27명 중 17명의 위원 임기가 6년을 경과

조치사항

개선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소관 조례에 아동급식위원회 관련 사항이 중복 존치하여 조례 간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게 한 위원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과 소관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

3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설계변경 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오류,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센터 시설공사 설계 변경 시 기존 공종의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신규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노무비 및 재료비 증액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자료(일위대가, 기초조사서 등)없이 설계변경을 실시. 또한 동일 센터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준공 내역서상 폐기물처리비 330,000원에 실비 정산 증빙자료 없이 정산 처리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된 폐기물처리비 330,000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중인 시설공사의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와 관련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시설공사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

4 정기·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시 하자보수 관리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 별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1회만 검사하고 만료기간이 도래한 공사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미실시

조치사항

시정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에 대하여 정기·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시고, 앞으로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 준공 후 도급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보조금 반환금 반납 규정 미준수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에서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에서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당해 연도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2023년 미반납 후 2024년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보조사업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즉시 반납하여 편성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6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및 환수 조치 부적정**관련규정**

- 「입양특례법」 제35조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고,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격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로 규정
- 한편, 「사회보장급여법」 제21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등의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변동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입양아동 <<<<에 대해 장애입양 양육보조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애입양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한 확인조사 후 적정여부 판단 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함. 또한 양육수당 환수 조치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월에 대해서는 환수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환수금액을 39,672,000원 과다하게 산정

조치사항

시정,통보, 신분상환계 ·주의

과다 산정한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적용하여 적정 환수금액으로 재산정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정한 처분조치 시행

7

아동학대 사례판단 지연 및 사례관리 연계 서면 통지 소홀

관련규정

-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완료 후 3 ~ 5일 이내에 사례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기 전 해당가족에 사례관리 연계안내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송부하여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조사대상 === 외 183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 후 5일을 경과하여 사례판단 하였으며 ■■■ 외 56건의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연계에 대한 서면 통지 누락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완료 후 3 ~ 5일 이내에 사례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에게는 서면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정지 부적정

관련규정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때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외체류 90일 이상 이더라도 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하면서 해외 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 예외 사유임에도 교환학생이라는 이유로 자립수당을 미지급

조치사항

통보

앞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급 정지 시 예외 사유를 확인하여 자립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9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 있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지출결의서, 현금영수증 등을 누락하는 등 증빙자료가 미비하였음에도 시정 및 보완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없이 정산검사를 완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 시 보조금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누락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0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미실시

관련규정

-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류 및 담배 소매업의 영업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면서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실시하면서 총 9건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미실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행정처분 절차 준수에 철저

11 자치법규 정비 지연

관련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의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동대문구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을 임의로 준용하여 위원회를 운영

조치사항

개선

상위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 사업 지침으로 갈음하여 임의 준용하는 등의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합리적으로 제정

12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업무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선정된 수탁자와 재위탁 계약 체결 후 선정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미공고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건물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위탁기관과 보험기간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별도 조치 미실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구립 ▼▼▼아동센터 운영 등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반드시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작성한 약정서의 명시된 이행사항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3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관련규정

- 舊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69호) 제7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7일 이상 공고가 아닌 4일 동안만 모집 공고 후 근로자를 채용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14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선정 부적정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69호) 제7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합격한 면접대상자 2명 중 1명을 면접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여 공고문(채용예정 인원 2명)과 다르게 1명을 최종합격 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예정인원 등 공고문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5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선정 및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관련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65호) 제7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업 종합지침」 제4장(참여자선발)에 따르면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년 ▲▲▲▲▲▲ 채용 과정에서 채용예정자 6명 중1명의 임용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인원에 대해 별도 채용계획 없이 기존 서류심사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담당주무관 및 팀장)만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1명을 추가 채용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예정자의 결원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고문 및 채용 계획서상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사업 지침에 규정된 사항과 다르게 면접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6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차량 운행일지 등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최소 49일에서 최대 164일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지연 작성

조치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7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 부적정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Ⅱ)」(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및 같은 지침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정원 변경신고를 접수받은 담당부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 규모가 운영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 시 시설 면적을 잘못 실측하여 최대 적정 입소인원보다 7명이 초과된 변경신고를 그대로 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정원 변경을 위한 현장 확인 시 건축물대장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18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 미실시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방문 영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시·군·구에서 기존에 이미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협의체 등을 활용하거나 심의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내 심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및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등 심의없이 서비스 제공을 승인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누락하지 않는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19

기초연금 환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소홀

관련규정

「기초연금법」 제19조, 제20조 및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기초연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경우 환수 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수대상자가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연금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과로부터 환수대상자로 통보된 ▲▲▲ 외 24명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없이 차기 연금 지급액과 상계하거나 처분사전통지 후 10일을 경과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간 중 상계 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기초연금 상계처리 시 처분사전통지를 누락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중 상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0

구립경로당 전세권 설정·말소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미상정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대장가액 2천만원 초과재산의 취득·처분 적정여부를 심의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구립 ◀◀◀경로당, 구립 ●●●경로당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말소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향후 구립 경로당 등 소관 재산의 전세권 설정·말소 업무 처리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1

구립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반납) 처리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을 때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통장잔액 및 실적보고서상 반납금액, 최종 실제 반납금액이 상이함에도 별도 조치없이 정산 완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지방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정산 및 반납업무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2 시설공사 준공검사 지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검사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지방계약법 관련 한시적 특례 기간으로 검사기간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발달장애인 ■■센터 등 4개 시설공사에 대하여 최소 10일에서 최대 12일 준공검사를 지연 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

앞으로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공검사 법정기한 내 준공 검사 확행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3

보조금 반환금 산정 부적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업무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에서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에서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보조금 반환금 산정 시 시비 보조율을 착오 적용하여 구비를 초과 반납하였으며, 구비 보조율 상향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지 않아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 요구·편성

조치사항

시정, 통보, 신분훈계·주의

앞으로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시 보조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구비를 초과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편성하여 불필요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4

장애인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에 따르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지급시 원천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고 여러 명의 출연료를 대표 1인 계좌로 지급하는 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보조금 정산 시 정산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5 지방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보조사업자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반드시 자부담금이 예치된 통장사본을 확인 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6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관리 소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의 사람은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정 또는 위탁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년 ~ 2022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대상자에게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센터의 매월 수리비 정산검사 시 지원금액의 연 한도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지급하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7

장애인연금(수당) 환수 절차 업무 소홀

관련규정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환수결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환수 대상자에 대하여 환수결정 납부통지서에 의한 통지 없이 유선 안내 등으로 갈음하여 환수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앞으로 장애인연금(수당)을 환수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환수결정납부통지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절차 관련 업무에 철저

28

장애인활동 지원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절차 이행 지연

관련규정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위한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도록 규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르면 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 자격정지 8개월을, 활동지원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
-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해당 부당 행위에 가담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 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를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라고 정의

지적사항

◇◇◇◇과는 수급자 ▽▽▽의 활동지원인력인 ▼▼▼의 부정수급 급여를 확인한 후 처분사전통지 후 의견까지 제출받았으나 행정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또한 수급자 ▽▽▽는 다른 활동지원인력인 ♠♠♠, ♣♣♣와 담합하여 허위 결제한 급여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분취하였으나 처분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절차를 미실시

조치사항

통보, 신분상주의

수급자 ▽▽▽ 및 활동지원인력의 장애인활동 지원 부정수급 관련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조사, 사실확인서 및 그간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및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DONGDAEMUN-GU



2
0
2
4
년
도
동
대
문
구
총
합
감
사
사
례
집

II

조사



A COLLECTION OF AUDIT CASES



2 0 2 4 년 도 동 대 문 구 종 합 감 사 사 례 집



2024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 (행정안전부)



1 제안서 평가 관련 입찰업체에 미공개정보 제공 의혹

비위내용

○○군 ◎◎◎는 □□□□□□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24.6.25. 도내 지자체 및 △△권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선착순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였는데, 최종 선정된 외부 평가위원 6명의 경우 소속기관에 공문이 접수되기 전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6명 모두 '(유)▽▽▽▽▽'에 최고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평가위원의 경우 평가위원 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유)▽▽▽▽▽'으로부터 신청서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받아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군에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

처분요구

수사의뢰 4

2 부정청탁에 따른 제안서 평가 등 청탁금지법 위반

비위내용

ⓂⓂ시 ◎◎◎은 ○○군 □□□□□□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유)▽▽▽▽▽'의 소장 ◇◇◇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평가위원 모집 신청서류 등을 사전에 전달받아 평가위원 모집공문 접수 전에 신청하여 ○○군의 선착순 모집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위 업체에 최고점수를 부여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요구

중징계 1, 수사의뢰 1

3

OO OOOO OOO 설치공사 자재선정 업무 부적정 등

비위내용

OO군 ◇◇◇◇과 ◎◎◎등 4명은 ‘OOO OOOO OOO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에 특정업체 제품의 규격 및 제품번호를 명시하고 관련법에 따른 자재선정심의 절차 등을 누락하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후 특허제품이라는 것을 숨기고 입찰 및 계약을 사업 강행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입찰에 참여한 시공업체와 자재 납품업체 간 분쟁 야기 및 공사 지연

처분요구

중징계 1, 경징계 3, 수사의뢰 1

4

OOO의회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업무 부적정

비위내용

OOO의회 ◎◎◎ 의장은 공무원 본인의 동의 없이 직원 2명(의정팀장 ◇◇◇, 전문위원 ◆◆◆)에 대해 강제로 인사교류(상호파견)를 추진하여 OOO 의회에서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에 대한 위법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위법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 의장은 동의없는 인사교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인 단독으로 수기 결재를 하여 강제로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

처분요구

기관장경고 1, 수사의뢰 1

5

□□□□ 정비사업 부실시공 및 검사 업무 태만 등

비위내용

- 군 ◇◇◇◇과 ◎◎◎ 등 7명은 ‘□□□□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 ① 과업지시서에 공사와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필수 도면 등을 누락시키는 등 부실 작성
 - ②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자재선정위원회 누락및 특정업체 부당 선정
 - ③ 시공 중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 된 것을 확인하고도 기성 및 준공검사 정상 처리
 - ④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발주처 승인 없이 총13회에 걸쳐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건축감리가 현장에 가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보고서를 방치 및 묵인
 - ⑤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누락하는 등 부실시공 및 불법 상태 방치 및 관리·감독 의무 해태

처분요구

기관경고 1, 중징계 2, 경징계 4, 훈계 1, 수사의뢰 1

6 항구복구공사 특허공법 선정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비위내용

○○군 ◇◇◇◇◇실 ◎◎◎등 2명은 '○○군' □□□□□ □□□□ 항구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에 경쟁 절차 없이 처음부터 '엔쏘일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허공법을 미리 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허공법 제안서 제출 공고 시 특허공법과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 사업비를 추정금액으로 산정하고, 정량평가 시 제안서 검토없이 모두 만점을 부여하는 등평가업무 소홀로 공법선정자와의 분쟁 초래 및 행정의 신뢰 훼손

처분요구

경징계 2

7 □□□□□ 유지관리용역 제한입찰 및 사업관리 부적정

비위내용

○○시 ◇◇◇◇◇과 ◎◎◎등 3명은 관내 오수 처리를 위한 '□□□□□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 내용에 포함된 유지·보수 차량(1톤 화물)을 실제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19~'24년까지 매년 평균 약 400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부당지급하고 현장 필수 상주인력이 계약 기준에 미달함에도 실제 투입 여부 등에 대한확인 절차 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 태만히 하였고, ◆◆◆◆과 △△△는 입찰 적격심사 실적평가 시 특정 장비 이행실적만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같은 계열사인 2개 특정업체에 최근 10년간 계약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

처분요구

경징계 1, 주의 2, 훈계 3, 시정(환수 23,777천원)

8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집행 부적정

비위내용

○○시 ◇◇◇◇과는 ◆◆선 상부에 ‘2019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 ① 협약에 필수적인 사업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위험부담, 지연배상에 대한 내용 없이 협약 체결
- ② 보조금법에 따라 수탁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별도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토록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집행 내역 미구분 및 증빙 내역 확인 불가
- ③ 위탁사업비를 ‘19. 12. 20. 지급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도 이월 승인을 누락하였으며 이듬해 ‘20 4. 14. 집행 실적이 없음에도 이자 정산내역만 제출 후 집행완료로 보고하는 등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법 위반

처분요구

주의 1

9 □□□ □□□호선 도로 재구조화 사업 관급자재 선정 절차 등 부적정

비위내용

○○도 ◇◇◇과는 ‘□□□ □□□호선 □□□지구 도로 재구조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보고서가 자재비 오기, 부적합한 공법 비교로 인해 부적정 하였음에도 준공처리하는 등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공사 ㉡㉡㉡팀은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지역업체 가점(7점) 추가, 공사비 배점 간격 변경(1→2점) 등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평가 항목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정성평가에서 2순위(1순위보다 1.8점 ↓)였던 (주)△△△△△△를 1순위(2순위보다 5.2점 ↑)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공법 선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

처분요구

경징계 1, 경고 1, 주의 1

10

초과근무시간 허위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비위내용

○○광역시 ◇◇◇◇과 ◎◎◎은 '24. 1. 1.~6. 30. 기간 중 평일에 초과 근무를 등록 후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고 시청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1,445천원을 부당 수령

처분요구

중징계 1, 시정 1(환수 1,445천원)

11

출장여비 부당 수령

비위내용

○○군 ◇◇◇◇과 ◎◎◎은 '24.1. 1.~7.31. 기간 중 출장을 신청한 뒤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 정산하여 64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650천원을 부당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1, 시정 1(환수 650천원)

1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비위내용

○○시 ◇◇◇◇과 ◎◎◎은 '24. 1. 1.~6 .30. 기간 중 근무지가 집에서 멀다는 이유로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 센터)에서 출·퇴근시간을 지정하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896천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1, 시정 1(환수 896천원)

13 공무용차량 사적 사용 및 관리 소홀 등

비위내용

○○군은 '23. 1. 1.~'24. 9. 9.(1년 8개월) 기간 중 8개 부서 총 10대의 공무용 차량을 점심식사 등에 사적 용무를 위해 총 343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미작성 하는 등 관리 태만

처분요구

주의 5, 훈계 5

DONGDAEMUN-GU



2
0
2
4
년
도
동
대
문
구
총
합
감
사
사
례
집

III

계약
심사



A COLLECTION OF AUDIT CASES



2 0 2 4 년 도 동 대 문 구 종 합 감 사 사 례 집

1

▲▲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방대책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30,660,000원	426,690,000원	3,970,000원	0.92%

세부조정내역

- 기계터파기 품셈 작업효율 조정 보통(0.65) → 불량(0.5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 포함된 공사로 재산정
- 전자인력단말기 비용 퇴직공제부금비사용(기포함)으로 제외

2

▲▲산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배수로 교체, 집수정 설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50,000,000원	45,199,000원	4,801,000원	9.60%

세부조정내역

- **일위대가** 기존pe배수로 철거, 벤치플룸관 설치의 터파기, 되메우기 중복 물량 조정
- **환경보전비** 누락된 환경보전비 계상

3

▲▲산 숲길 맨발길 조성 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수목제거 및 이식공사, 기존 웬스 해체 및 황토 포장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86,962,980원	184,580,000원	2,382,980원	1.27%

세부조정내역

- **자재단가** 시멘트 168원/kg → 165.9원/kg 등 5개 품목 조정
- **임목폐기물** 상차비 제외[임목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재활용 협약]
- **일위대가** 합판거꾸집, 각재 자재수량 조정 및 공구손료 비목 조정 등
- **제경비** 간접노무비(13.7%→14.3%), 기타경비(6.4%→5.5%) 조정

4 동대문구 ▲▲▲▲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센터 분전반설치, 전열설비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55,000,000원	53,823,000원	1,177,000원	2.14%

세부조정내역

- **일위대가** 레일조명등기구 설치, LED등기구 설치 서울형품셈 적용
- **제경비** 간접노무비(12.2%→12.6%, 기타경비(5.8%→5.2%) 조정
- **자재단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등 13개 품목 조정

5

▲▲▲대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인조잔디 구장 조성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48,947,000원	238,084,000원	10,863,000원	4.36%

세부조정내역

- 잔토처리 운반비 사토장 임의적용 → 토사운반 세부 운반경로 및 위치 반영
- 일위대가 중복계상된 모르타르 제외 및 합판거꾸집 등 품셈 조정
- 자재단가 내수합판 등 11개 품목 조정

6

▲▲로 스마트폴 구축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CCTV 및 환경센서 등 스마트폴 구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0,351,930원	40,000,000원	351,930원	0.87%

세부조정내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 관급 미포함 공사로 반영
- **기타경비** 5.8% → 5.2%

7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외벽단열공사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22,134,000원	203,390,000원	18,744,000원	8.44%

세부조정내역

- **일위대가** 건식벽체 설치, 수장합판 설치 등 6개 품셈 조정
- **제경비** 간접노무비(12.2%→12.6%), 기타경비(5.8%→5.2%) 조정
- **자재단가** 고철 등 16개 자재단가 조정

8 공원녹지 한파대비시설 설치사업(▲▲권역)

사업개요

공사개요	바람막이 설치 및 교체 13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4. 12. 이내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8,300,000원	47,415,000원	885,000원	1.83%

세부조정내역

- **일위대가** 잡철물제작 설치 공구손료 요율 조정 등
- **제경비** 환경보전비 계상(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0.3%

9

2024년 동물사체(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2024년 동물사체(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1,600kg)
용역기간	2024. 3. ~ 12.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5,850,000원	15,050,000원	800,000원	5.05%

세부조정내역

- 인건비조정(시중거래가격 참조)
 - 의료폐기물 운반처리비 : 9,500원 → 9,000원

10 2024년 산림증진서비스(숲해설 운영) 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수목정보 · 생태계 상식 등 전문적 숲해설 프로그램 제공 등
용역기간	2024. 3. ~ 11.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30,000,000원	29,738,000원	262,000원	0.87%

세부조정내역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요율 조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일반관리비 6.45% → 6%
- 이윤 10.49% → 10%

11

2024년 하반기 차없는데이 운영 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차없는데이 행사 기획, 행사장 설치, 운영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4. 10. 21.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44,651,000원	44,552,000원	99,000원	0.22%

세부조정내역

- 재료비 조정(산출조사근거 기준)

- 듀라테이블 : 280,000원 → 7개×2일× 10,000원 = 140,000원
- 형광조끼 : 50,000원 → 10개×2일× 5,000원 = 100,000원
- 발전기기름 : 221,819원 → 1개×2일×110,000원 = 220,000원

12

▲▲천 문화복합공간 현수막게시대 이전 설치

구매개요

요청부서	치수과
품 명	현수막게시대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8,260,000원	18,010,000원	250,000원	1.37%

세부조정내역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 간접노무비 요율 조정 : 13.7% → 12.2%
 - 기타경비 요율 조정 : 6.5% → 5.8%

13

▲▲▲▲센터 빔프로젝터 등 구매설치

구매개요

요청부서	경제진흥과
품 명	빔프로젝터 등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22,000,000원	21,615,000원	385,000원	1.75%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 거래가격 참조)
 - 설치비용 : 1,850,000원 → 1,700,000원
 - 세팅비용 : 1,600,000원 → 1,400,000원

14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강관리실 의료기구 구매

구매개요

요청부서	동행과
품 명	자동제세동기 등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19,909,450	19,316,550원	592,900원	2.98%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 거래가격 참조)
 - 큐보드 : 338,000원 → 220,000원
 - 손목 운동기 : 64,000원 → 48,000원
 - 휴대용저주파 치료기 : 78,000원 → 63,000원
 - 간섭파 치료기 : 1,680,000원 → 1,5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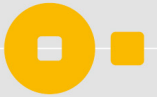
DONGDAEMUN-GU



2
0
2
4
년
도
동
대
문
구
총
합
감
사
사
례
집

IV

청
렴



A COLLECTION OF AUDIT CASES



2 0 2 4 년 도 동 대 문 구 종 합 감 사 사 례 집

1 청렴 라이브(LIVE) 교육

추진개요

- 일 시 : 2024. 9. 24.(화) 15시
- 장 소 :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 강당
- 대 상 :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시설관리공단 직원
- 추진배경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대상기관으로 선정

추진내용

-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수상작을 내용으로 한 ‘샌드아트 공연’. 전통 판소리 ‘신흥보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청렴 판소리 공연’과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청렴 특강과 결합하여 공연형 청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즐겁고 효과적으로 청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

전 부서(동) 청렴실천서약식 실시

추진개요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부패근절의지를 다지고자 전 부서(동)가 자체적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부서(동)에 맞게 청렴실천표어를 담은 ‘청렴한컷’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여, 전 직원의 청렴 결의를 다졌습니다.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서

나는 동대문구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부패·부정권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동대문구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 나는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예산·결산 관행 등 청렴성에 의심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와 권한 남용, 이권개입, 감정행위, 부당한 업무지시(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학연·지연·혈연 등에 영향을 받아 특혜를 주거나 권력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받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권자서명)

2024년 3월 20일



도 로 과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서

나는 동대문구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부패·부정권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동대문구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 나는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예산·결산 관행 등 청렴성에 의심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와 권한 남용, 이권개입, 감정행위, 부당한 업무지시(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학연·지연·혈연 등에 영향을 받아 특혜를 주거나 권력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받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2024년 월 일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서 전자서명



청렴한컷

건강은 사람 살리고, 청렴은 사회 살린다!


3 청렴아 놀자! 이벤트 개최

추진개요

- 청렴OX퀴즈 이벤트, 나부터! 실천다짐 이벤트, 청렴만화 완성이벤트 등 청렴아 놀자! 이벤트를 개최하여 직원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렴아 놀자

소통하는 조직문화 나부터! 실천 다짐 이벤트



주 제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기 간 2024. 6. 17.(월) ~ 6. 21.(금)

참여방법 상급자와 하급자 양쪽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생각 또는 다짐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인센티브

- ✓ 잘 표현된 모범답안 선정(6명 이내) → 치킨 선물
- ✓ 참여자 중 50명을 추천 → 커피 선물
- ✓ 참여자 전원 청렴 마일리지 10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렴아 놀자

청렴만화 완성 이벤트

"만약 내가 부정청탁을 받는다면?"

만화 속 공무원 이청백이 되어 부정청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고 만화를 완성해주세요!

✓ **청렴 실천 의지** ✓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 **참여 기간** : 8.12.(월) ~ 8.23.(금) [2주간]
- **참여 방법** : 이청백의 마지막 대사를 문장으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sh333@ddm.go.kr)로 보내주세요! (부서 / 직급 / 성명 / 연락처 / 대사내용 기재)
- **참여 보상** : 참여자 중 50명 추천 → GS25 만원권! 참여자 전원 → 청렴 마일리지 20점
- **당첨자 발표** : 8.28.(수) 청렴소통방

청렴아 놀자

1. 정사장의 사정

이번 사업인할 담당자가 친한 이청백오빠네?

정사장

2. 정사장의 침략

원지냈어? 오랜만이다~

정사장이냐? 혹시 이번 사업 우리 업체로 해주면 안될까??

공무원 이청백 정사장

3. 이청백의 고민

아무도 모를텐데 이번만 도와줄까..

공무원 이청백

4. 당신이라면?

.....

4 마음을 여는 청렴 푸드트럭 행사

추진개요

- 일 시 : 2024. 7. 1.
- 장 소 : 구청 앞 광장
- 대 상 : 출근길 구청 직원

추진내용

- 동대문구청장이 직접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간식을 배부하며 직원을 격려하고, 청렴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하여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간부들이 직원들 앞에서 청렴 실천을 외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조직 내 부패근절청렴실천 의지를 널리 확산하였습니다.



2024년도

동대문구

종합감사사례집

발행처 | 동대문구

발행일 | 2025. 6.

주 소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편 집 | 감사담당관

연락처 | (02) 2127-4009

비매품